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4.

발 의 자 : 이병진 · 김 윤 · 김현정
김남근 · 김동아 · 송재봉
최민희 · 김문수 · 강득구
허성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(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)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(항소인)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.

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

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,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68조).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③ 제2항의 경우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법원은 제2항의 기한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다는 취지로 제2항의 변론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린 변론기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8조(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68조(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의 경우 원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법원은 제2항의 기한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다는 취지로 제2항의 변론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<u>제3항</u> 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	⑤ -----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. ----- -----.